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앞쪽)

성명		생년월일	
----	--	------	--

농어가부업				
① 구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산		()	()	
⑦ 고공품제조		()	()	
⑧ 면세분기타		()	()	
⑨ 민박		()	()	
⑩ 음식물판매		()	()	
⑪ 특산물제조		()	()	
⑫ 전통차제조		()	()	
⑬ 과세분기타		()	()	
농어가부업 합 계	⑭ 합 계			
	⑮ 비 과 세 금 액		30,000,000	
	⑯ 과세대상금액 (⑭-⑮)			

어로어업·양식어업				
⑰ 구분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수입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⑳ 소득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㉑ 업종
㉒ 어로어업		()	()	
㉓ 양식어업		()	()	
어로어업·양식어업 합 계	㉔ 합 계			
	㉕ 비 과 세 금 액		50,000,000	
	㉖ 과세대상금액 (㉔-㉕)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어로어업·양식어업은 5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 민박의 소득금액 : 10,000,000원,

• 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000,000원(수입금액 220,000,000원)인 경우

- "㉒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220,000,000 \times (2,000,000/22,000,000) = 20,000,000$ 원이 됩니다.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 축산란부터 ⑬ 과세분기타란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자와 ㉒ 어로어업란 또는 ㉓ 양식어업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 "축산"란, "⑦ 고공품제조"란, "⑧ 면세분 기타"란, "㉒ 어로어업"란 및 "㉓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3. "⑥ 축산"란: 이 서식 부표(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지 않으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50마리	토끼	5,000마리	1. 가축의 규모는 성축(成畜)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育成牛)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가축별로 매월 말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연간 평균 두수로 합니다.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지	700마리	오리	15,000마리	
산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양	300마리	개	500마리	

4. ⑨ "민박"란, ⑩ "음식물판매"란, ⑪ "특산물제조"란, ⑫ "전통차제조"란 및 ⑬ "과세분 기타"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5. "⑮ 비과세금액"란의 "③ 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고, "㉕ 비과세금액"란의 "⑱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 소득금액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 과세대상금액"란의 "③ 수입금액"란 및 "④ 소득금액"란에는 "⑭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⑮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㉖ 과세대상금액"란의 "⑱ 수입금액"란 및 "㉗ 소득금액"란에는 "㉔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㉕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
9. "③ 수입금액"란, "⑱ 수입금액"란, "④ 소득금액"란 및 "㉗ 소득금액"란의 상단 "()"에는 각각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고, 하단에는 해당 란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⑥ 축산"란부터 "⑬ 전통차제조"란까지, "㉒ 어로어업"란 및 "㉓ 양식어업"란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장자: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적습니다.

나. 기준경비율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가축종류()	가축종류()	계
월평균 사육두수 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성 방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개	5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